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98 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은혜 · 김정재

윤한홍 • 이만희 • 박정하

강명구 • 고동진 • 김태호

김상훈 의원 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 좌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, 청년의 자산 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 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1조의22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91조의22(청년도약계좌에 대한	제91조의22(청년도약계좌에 대한			
비과세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	비과세) ①			
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	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				
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				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				
좌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도약				
계좌"라 한다)에 <u>2025년 12월</u>	<u>202</u> 8년 <u>12월</u>			
<u>31일</u> 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	31일			
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				
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이				
자소득등"이라 한다)의 합계액				
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				
지 아니한다.	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	